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 ○「주택법」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 ○ 조정위원회 기능(안 제11조 6호 신설)
 -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중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
 ⇒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「주택법」제52조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기　　타
 (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14. ~ 6. 3.)
 (2) 규제심사 : 의견없음.
 (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 ○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할 사항에 「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」이 추가됨에 따라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 ○ 주요 개정 내용은
 - 본 조례안 제1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·조정 기능 중 「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」을 제6호에 추가 신설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